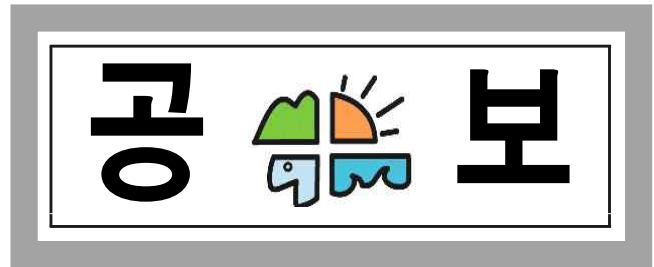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76호 2013년 5월 31일(금)

조 례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12
-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16
-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3년 5월 31일

속초시조례 제2320호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제4조본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장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본문,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다음 각호의 1과(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에)”로 한다.

제6조제5호, 제7조제3항(제3호), 제10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주차장)					
30분까지 (1구획당)	30분초과시 매10분당 (1구획당)	1일 주차 요금	월 정 기 간		
			주간	야간	주·야간
600원	300원	6,000원	75,000원	56,000원	131,000원

(비고)

-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때 10분단위에서 5분이 경과시 적용한다.
 - 주차시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고객에 한하여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간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3월 ⇒ 09:00 ~ 19:00
- 시장은 「자연공원법」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주차장과 주차목적과 방법이 동일한 인근 공영주차장은 이용객의 편의와 요금체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별도 규정한 시설사용요금표에 준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단,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시설면적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3,000㎡미만 : 시설면적 200㎡당 1대 - 연면적 3,000㎡이상 : 시설면적 100㎡당 1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단, 종교집회장, 공연장, 소극장은 시설면적 100㎡당 1대 ○ 숙박시설 : 시설면적 12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개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300㎡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

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 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

센트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하며, 산정된 주차대수는 소숫점 이하를 1로 본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 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가산금)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노상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1. ~ 3.(생략)	제4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노상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1. ~ 3.(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①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의 거부금지) 노상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 4. (생략) 5. 기타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주차의 거부금지)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의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 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		

자격은 <u>다음 각호의 1과 같다.</u> 1. ~ 2. (생략) 3. <u>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은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특별법」 제65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장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시장은 <u>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시장은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략) 3. <u>기타</u>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u>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장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u>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시장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노상주차장의 표지등) ① (생략) ② (생략) 1.~ 3. (생략) 4. <u>기타</u>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제10조(노상주차장의 표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u>< 신 설 ></u>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u>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

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의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
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 등
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
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3년 5월 31일

속초시조례 제2321호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속초시 공무원 중에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 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
5. 행정경력 또는 각종 심사·심의 경험이 있는 시민과 해당지역 주민 중 대표성을 갖는 주민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

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

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전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전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전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전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전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전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전을 심의한 결과 안전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현지조사)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 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3년 5월 31일

속초시조례 제2322호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는 제외한다)

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등 「도로법」 제10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관리부서"란 가로수를 조성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바뀌심기"이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을 식재할 수 있다.
5.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 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9.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5.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1년 이내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가로수 조성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도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 및 활착에 지장이 없을 것

제6조(조성협의 등)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신설 시행기관 또는 시행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장 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허가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관리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도로에 인접한 대지가 건축허가 등을 수반할 경우 대지안의 조경식재 수종을 가로수와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
5.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6. 그 밖에 관련법령,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7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하여야 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도에 접한 보도에 식재 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

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8조(식재 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구성하고 관리한다.

② 교목의 식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③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으며, 동일수종의 군식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상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④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⑤ 새로 신설 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시행기관 또는 시행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⑥ 가로수는 별표 3에서 정한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규격에 맞게 식재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식재할 수 있

다.

제9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3장 가로수 관리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 불량 등 미관을 해치는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가망이 없는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9. 그 밖에 바꿔 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視界)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가로수 관리부서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아닌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부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병해충의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돌발 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5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리부서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약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樹勢)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 단목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 관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시설물) ① 새로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시설물은 별표 6에 따라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관리한다.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관리부서는 별표 6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뀌심기를 필요로 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최소 연 두 차례 이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식재·바꾸심기·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17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주민들이 가로수의 관리에 참여 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 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 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틀 안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변에 주차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 ③ 모든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식재·관리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1의 제6호에 따른 도시림조성 법인등록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1의 제3호 따른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훼손자 부담금)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고의로 훼손한 자에게 법 제21조 및 「도로법」 제 76조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원인자 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리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조례, 속초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현지여건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장은 원인자가 사업 시행시 사업 승인조건이나 관련 규

정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인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후 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하자책임 담보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 수종 및 규격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담보기간이 경과한 후 정상 활착 되었을 시 반환한다. 다만, 고사 또는 고유 수형이 상실(수관 3분의 1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시에 귀속 시킨다.

⑧ 공사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 7의 비용부담 산정 기준에 따른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흉고 직경의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충해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⑨ 그 밖에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가산금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관리대장)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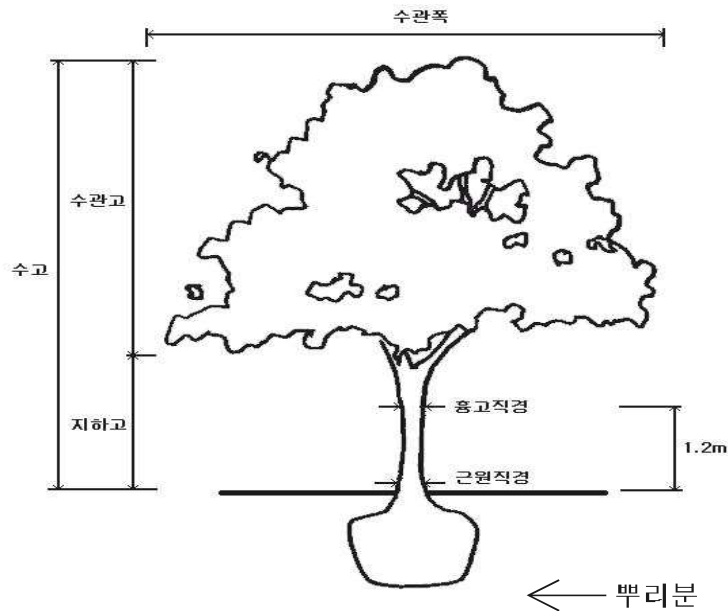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제3조 제9호 관련)



- 수고(樹高) :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돌출된 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 수관고(樹冠高) :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지하고(枝下高) : 지표면에서 역지(力枝)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흉고직경(胸高直徑) : 지표면에서 1.2m 지점의 줄기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의 줄기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줄기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으로 한다.
- 근원직경(根元直徑) :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줄기가 분기하는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 수관폭 :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 분(뿌리분) : 나무의 뿌리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흙

[별표 2]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9조 제1항, 제5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도로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3]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9조 제6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5cm이상, 근원경 18cm이상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식재 가능하며, 수목의특성상 10%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cm이상, 근원경 15cm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경 12cm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8cm이상, 근원경 10cm이상	

[별표 4]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1. 대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다.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옴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벗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앓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별표 5]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4조 제1항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나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 디프제 살포	1화기 : 6월 상순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알락하늘소	현사시 포플러류	가지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5월 하순 ~ 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만코지 수화제 살포	1화기 : 5월 초·중순 2화기 : 9월초 ~ 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잎	-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살포	4월 중·하순
버즘나무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 수관살포 : 5월 하순 ~ 6월 초순 - 나무주사 : 6 ~ 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나무	잎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살포	4월 중·하순
응애류	벚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나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발생초기(수시)
각지벌레류	벚나무 소나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6]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6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반원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 보호틀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달리 할 수 있으며, 보호덮개도 입지 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별표 7]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20조 및 제21조 관련)

피해발생의 경우	1.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해이외의 원인발생의 이유	1.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시장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시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시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 식재
☐ 이식
☐ 제거
☐ 가지치기

승인신청서(제21조 제2항관련)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종		규격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량	본
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 식재

☐ 이식

☐ 제거

☐ 가지치기

승인서(제21조 제3항관련)

승인자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대상	가로수위치						
	수종		규격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량	본	
작업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승인조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납부기간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첨 부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제23조 관련)

도로노선명				구 간				시점:				종점:				도로종류							
좌우측				연장				m				도로폭				차도: 좌측보도: m 우측보도: m							
최초조성		/ / 부터		/ / 까지		준공일자		/ /		사업비		천원		시 공 자									
수	종	식재본수 (본)	수고 (m)	흉고직경 (cm)	근원직경 (cm)	수관폭 (cm)	수령 (년)	식재위치	식재거리 (m)	식재간격 (m)	식재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수 종					가로수 변동사항(본)																가로수 관리사항(본)								점검 확인			비 고	
						증가내역								감소내역																				
	연월일	계	은행	해송	히말라야시다	느릅	계	신규조성	갱신	보식	하자보식	기타	계	자연고사	인위피해	교통사고	갱신제거	지장이식	지장제거	갱신제거	기상피해	기타	계	가지치기	방제	비료주기	토양개량	외과수술	관수	기타	담당	계장		과장
/ /																																		

관리시설	보호틀				보호덮개				지주대				보호대				기타()				기타()				기타()				점검확인			비고		
	연월일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담당	계장		과장	
/ /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3년 5월 31일

속초시조례 제2323호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u>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u>) ① (생 략) ② (생 략)	제14조(<u>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u>과세특례</u>) 법 제112조 제2항에 따 른 재산세 <u>과세특례</u> 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5조(<u>도시지역분의 세율</u>) 법 제112조 제 2항에 따른 재산세 <u>도시지역분</u> 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6조(<u>납기</u>)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5만원 이하인</u>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 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u>부과징수한다.</u>	제16조(<u>납기</u>)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10만원 이하인</u>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 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u>부과징수할 수 있다.</u>